



제 413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 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유공자에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 〉
■ 우신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469호)

2024.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권 태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국가유공자에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우신구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2. 1.
3. 회부일 : 2024.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유공자들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음. 그 과정에서 약 8천여명이 전사 또는 행방불명됨.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영웅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조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임.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 개정안은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함)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18. (생략) <u><신설></u>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 ----- ----- ----- ----- -----. 1. ~ 18. (현행과 같음) <u>19.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u>
<u><신설></u>	<u>20.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u>
<u><신설></u>	<u>21.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u>

② ~ ⑤ (생략) <u><신설></u> ⑥ (생략)	<u>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동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이 법 적용 대상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등 총 1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음.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과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군 첩부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사 또는 행방 불명되는 등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안 제4조제6항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와 관련하여 현행 「특수임무유공자법」을 따르도록 하여 개정안대로 입법화되더라도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 수준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
- 「특수임무유공자법」은 2005년 제정되었는데 별도의 법 제정을 한 취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를 별도의 요건 심사 없이 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특수임무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상 요건 심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판단받는 것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²⁾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2) 특수임무공로자를 제외한 특수임무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임.

<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

(2024. 1. 31. 기준)

구분	특수임무사망·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인원(명)	18	1,294	2,58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유형	전몰·순직(18명)	전상·공상(1,291명) 재해부상군경등(3명)	재해부상군경 (14명)

자료: 국가보훈부

- 현행 국가유공자법상 다른 법률에 의하여 예우·지원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가 있음.³⁾
- 특수임무유공자도 이들과 같이 국가유공자법의 정의규정에 포섭할지 여부는 이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특수임무유공자법」 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수임무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경우 유사대상인 무공포장자, 상이등급 기준 미달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

3)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12

참고1

특수임무유공자 현황 및 지원내용

☐ 특수임무유공자 현황

(‘24. 1월기준 / 단위: 명)

대상구분	합계	본인	유족
특수임무 사망자	18(0.5%)	-	18(1.7%)
특수임무 부상자	1,294(33.2%)	1,133(39.7%)	161(15.5%)
특수임무 공로자	2,583(66.3%)	1,720(60.3%)	863(82.8%)
계	3,895(100%)	2,853(100%)	1,042(100%)

☐ 특수임무유공자 現 지원내용

대상구분	보상금	취업	교육	대부	의료	수송	기타 복지
특수임무 사망자 (유족지원)	○	○	○	○	○		○
특수임무 부상자	○	○	○	○	○	○	○
특수임무 공로자	X	○	○	○	○	X	○

☐ 특수임무유공자 보상연혁

- (2004.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소관) 제정 보상*
※ 보상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지급
- (2005.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부 소관) 제정 지원*
※ 본인 및 유가족에게 보훈급여금(보상금 및 수당) 외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 지원
- (2011.8.)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유공자*로 명칭 변경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심사 심의 관련 규정 비교표]

구 분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요건심사	○	×	×	×
상이등급	○	×	○	×
관련법률	국가유공자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해당조문	제6조(등록 및 결정)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공로금 등) ①특수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로금) ①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